

#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진상규명 및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2020년 12월 28일(월) 낮12시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드림(문화다양성교원학습공동체), 빈곤사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준),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살림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 ■ 기자회견 순서

- : 경과설명 및 기숙사사망사건 관련 규탄발언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 : 이주노동자 숙소 근본대책 촉구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 철저한 수사와 조사 촉구 발언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 이주노동자 숙소 근본대책 촉구 발언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대표)
- : 주거권보장 촉구 발언 (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활동가/한국도시연구소책임연구원)
- : 기자회견문 낭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 : 향후 계획 설명
- : 항의서한 전달

##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경과>

- 20일경부터 페이스북에서 부고가 돌아다녔음. 지구인의정류장에서 故속행씨에 대해 22일 화요일 저녁부터 수소문을 했고, 캄보디아에 있는 노동자 S에게 사건을 들었다는 답이 와서 신원 문의함. S가 아이디카드 사진 보내음. 속행씨 동료 N씨 연락되어 소통함. 사장 집에 동료노동자 4명 있다고 답변함.

-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여성노동자 5명이 세 개의 방을 나눠서 쓰고 있었음. 속행씨는 혼자 쓰고 있었음. 금요일 저녁부터 전기 잘 안들어왔고 난방 안되었다고 함. 목금토에 일을 쉬기로 했고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일함. 너무 추워서 3명은 금요일 밤부터 다른 데 가서 잤고 토요일에 N씨도 밤에 나왔음. 속행은 남아있겠다고 했음. N이 나오기 전에도 차단기가 계속 내려갔다고 함. 5~6일 전부터 토요일 경까지 '전기를 봐달라' 라고 사장에게 말했으나 조치가 없었다고 함. 토요일에는 차단기가 자주 내려갔고, 다시 누전차단기를 올렸으나 10분도 안되어 떨어져서,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가보다?'고 생각하여 냉장고와 다른 전구들을 다 끄고 올리려하였는데도 차단기가 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함.

- 일요일 4시 경 N이 돌아와서 언니 발견. 자나보다 생각했는데 아픈 것 같아 보니 사망해 있었음. 사장에게 연락했고 사장이 경찰에 연락해 50분쯤 뒤 경찰이 옴. 사장이 N한테 속행이 12시-1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이야기함. 사망 전에 어깨가 좀 아프다고 해서 근육통 약 먹고 N이 파스 붙여 주었음. 그 외에 별로 아픈게 없었다고 함. 속행씨 휴대전화가 안보인다고 함. 서류 같은 것도 사장이 가져갔다고 함.

- 수요일 오전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 현장 방문. 방송, 신문 등 많은 언론사 취재옴. 오후에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정은주 현장 도착함.

- 23일 오후에 사장 아들 나타났고 얼마 있다 농장주 부부와 노동자 4명 돌아옴. 농장주는 강력히 취재 거부하고 경찰까지 불렀음. 6시 경까지 경찰 15명이 배치. 여자숙소 방 3개는 얼음장 같았음. 동료 노동자 접촉 제재당함.

- N은 경찰이 판매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함. 사업주도 동료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외부 접근을 막아서 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음.

- 12월 23일 50여개 단체들이 (가칭)농업이주여성노동자 사망사건대책위 구성에 뜻을 모으고 1차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망사건, 이주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도를 규탄한다! -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성명을 발표함.

- 12월 24일 경찰이 부검 1차 소견을 발표함. 동사가 아니라 간경화 악화가 사인이라고 함. 노동부는 언론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함.

- 대책위는 이러한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24일에 <이주여성노동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과 대책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 발표함.

## <기자회견문>

###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1. 경기도 일대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2월 20일, 포천 일동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한 이주여성노동자가 동료 이주노동자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망한 이는 2016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농업에 종사해 온 캄보디아 출신의 서른 살 여성 이주노동자. 고인이 피를 토한 흔적이 있는 침실에서는 출국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귀국 비행기 티켓이 함께 발견되었다.

2. 고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비닐하우스 구조물은 고인이 생전에 근무하였던 농장의 농장주가 기숙사로 제공한 것으로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패널을 세워 마련한 조약하기 짝이 없는 임시 건물이었다.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날에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비닐하우스 숙소에 난방이 되지 않았으며 추위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모두 근처의 다른 노동자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결국 고인은 영하 18도에 이르는 한파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혼자 잠을 청하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24일 부검 결과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및 합병증이라는 1차 소견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은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설명 될 수 없다. 고인의 사망은, 한파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추위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의 문제,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숙식 환경 속에서 고강도 노동을 지속해야 했던 노동 환경의 문제,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시에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

4. 지금도 수만 명에 달하는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만든 임시가옥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임시가옥은 절대 집이 될 수 없다. 지난 여름 장마 기간동안의 수해 이재민의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였던 것을 기억하는가. 임시가옥은 폭염, 폭우, 한파를 막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에 취약하고 화재와 같은 상시적인 위험도 안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는 꾸준한 외침으로 인해 2019년 근로기준법, 외국인 고용법의 개정이 이루어 졌지만 이 중 현존하는 비닐하우스 숙소와 같은 임시건물 숙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없다.

5.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인이 근무했던 농장의 운영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농지 가운데 설치한 조약한 임시 건축

물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온 고용허가제 담당 고용노동부,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또한 동료의 사망을 목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다른 노동자들이 사업장과 사업주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게 머무르고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차가운 비닐하우스 속에서 따뜻한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며 영원한 잠에 들어버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1.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산재사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하라.
2. 피해 이주노동자의 유족에 대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책을 마련하라.
3. 아직도 임시가옥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4. 비닐하우스, 농막,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불법 임시건축물의 기숙사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
5.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변경금지정책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허용하라.

2020년 12월 28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일동

## <발언문>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 나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자답게 살 수 있겠다,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겠다, 우리 권리 보장해줄 것이라고 정부한테 많이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하루종일 열악한 노동조건에 고강도 노동해서 몸을 기댈 수 있는 제대로된 기숙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보다 낮은 수준의 기숙사만 있습니다. 전기 안나오고, 겨울에 난방이 안됩니다. 사람 살 수 없는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합니다. 화장실 샤워실 없거나 있어도 멀리 있는 것 많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서 기숙사비로 2~30만원 떼입니다. 이렇게 월세장사 하게 만드는 '숙식비 징수 지침'은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와 사장들은 이주노동자를 사람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말하는 기계로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주노동자를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제대로된 기숙사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가 전기도, 난방도 되지 않는 기숙사에 자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이주노동자가 제대로된 기숙사에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정부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도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줍니다. 적게 투자해서 많이 이윤 남기기 위해 정부와 사업주는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이주노동자가 집으로 살 수 있는 기숙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사업주 농장주는 처벌해야 합니다. 사건 터지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대변해 말하기 바쁩니다. 자신들이 저질른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건강도 목숨도 중요합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정부와 사업주의 눈에는 아무 권리 인정해줄 필요가 없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로 보이지만 이주노동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에게 하는 행동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숙사를 비롯한 모든 이주노동자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숙사, 추위로 더위로 목숨을 잃지 않는 기숙사입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기숙사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목숨을 잃지 않도록 기숙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대표 (서면 발언)

지금은 연말이 며칠 남지 않은 2020년입니다  
가끔 저는 정말로 2020년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기숙사로 제공되어도, 심지어 그 비닐하우스 기숙사를 사용하는 대가로 월세를 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지금이 진짜 2020년이 맞는지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여름만 있고, 겨울이 없는 외국에서 일을 하러 온 노동자가, 이 엄동설한에 난방장치가 고장나서 방치된 상태로 기숙사에 있다가 사망한 일이 발생한 지금이 2020년이 맞는지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주거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함겨운 노동을 하고 들어온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숙소의 안전이 기본적인 요소인데, 비닐하우스는 여성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하고 심리적 불안감과 실질적인 성폭력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히게 됩니다.

화장실, 샤워 공간의 위생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기숙사가 얼마나 여성에게 공포이고, 그 자체가 위험인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상식선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왜 정부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에서, 유엔 인권 이사국인 나라에서, 한국 정부와 국가간 MOU를 통해 공식 통로로,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한국 정부가 가진 상식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궁금 합니다.

비닐하우스 기숙사 문제가 공론화 된지 벌써 몇년째 입니다. 2018년 이주여성 미투에서도 성폭력 위험 노출이 큰 기숙사 문제가 제기되었고, 정부는 처음으로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고 나서야 부랴 부랴 대책을 세우는데, 그 대책이란 것이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이주 목적국이지만, 여전히 해외로 노동력을 송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로 해외로 나가는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워홀러로 간 한국 청년들이, 젊은 여성들이 기숙사로 비닐하우스를 제공받길 저는 원하지 않

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거시설이 될 수 없는 곳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한국의 모든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여성 이주노동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입니다.

전 국민이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연말 분위기에 설레던 때,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흑한의 비닐하우스에서, 20여일 후에는 따뜻한 고향땅으로 간다는 행복한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견디다 결국 냉골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주노동자 속행. 어떤 요인들이 합쳐져 이런 비극을 만들어 낸 것일까.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인이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해 온, 그리고 고인이 사망한 장소인 해당 기숙사는 고인이 일하던 농장 주변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패널을 세우는 방식으로 설치된 간이 건물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0조는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죽음을 맞이한 비닐하우스 기숙사는 한파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추위를 전혀 막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대책위가 확보한 고인의 동료 이주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난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영하 10도 이상, 최대 영하 18도에도 이르는 추위가 14일부터 이어진 지역에 비닐하우스 간이 구조물에서 난방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숙식을 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숙사로 사용된 해당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농지전용신고가 이루어 졌는지, 건축허가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허가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에서 말한 근로기준법 외에도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주가 고인에게 해당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제공하고 그 숙식비를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주에게는 기숙사를 안전하게 관리할 고도의 주의의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가 조사 결과 사용주가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난방시설이나 전기시설 고장에 대처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사죄의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에서 말한 위법사실들이 있었는지, 그것이 고인의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리인단은 금주 내에 사업주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21세기 대한민국에, 방역선진국으로, 문화 선진국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놀라 물을 테지만, 지금도 훙한 속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인의 죽음은 예견된 비극’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기복 대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8월 수해 이주민의 80%가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 숙소를 이용하는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3천 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기숙사 시설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다는 현장점검은 영하의 날씨에 난방도 되지 않는 방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젊은 이주노동자의 황망한 죽음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또 어떤 변명을 늘어 놓을지 궁금합니다.

하우스'가 집이라는 건 초등학교도 아는 영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닐하우스가 사람이 사는 집일 수 없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식물을 위한 공간이지,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은 결코 아닙니다. 외벽을 비닐로 덮어 바깥 공기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비닐하우스는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겨울철에도 딸기·고추·토마토·오이·상추·깻잎·치커리 등의 채소와 화훼류를 재배할 수 있게 합니다. 식물에는 적정 온도를 보장할지 모르지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열악

한 공간도 따로 없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무덥습니다.

그래서 이주인권단체들은 줄기차게 외쳐 왔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수해 이주민 80%가 이주노동자였는데도 변한 게 없는 현실은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고용노동부가 눈 가리고 아웅 할까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어떠한 형태의 임시가옥이라도 기숙사로 허용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주노동자 주거권만 아니라 사업장 변경 조항과 숙박비 공제, 근로계약 등 외국인력 전반을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거권 네트워크 이원호 활동가

포천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하라!

‘집 아닌 집’이 삶을 삼켰다. 지난주(12/20) 경기도 포천의 농장에서 일하던 서른살 이주여성노동자가,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파 경보가 발령된 혹한의 날씨에 난방조차 작동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

경찰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발표했지만,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집 아닌 집’, 비닐하우스의 열악한 숙소 환경이, 젊은 이주여성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의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문제가 제기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용된 노동의 형태와 장소적 특성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주거 선택의 자유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주거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보증금과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비주거용 시설이나 열악한 주거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는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비주거용 시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주거 시설은 일터와 주거가 분리되지 못하고, 사생활 침해 등 인권에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규정한 ‘최저주거기준’ 이하일 뿐만 아니라 화재나 수해 등 재난·재해에 취약한 위험한 거처로, 잦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상태가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주거권을 명시한 주거기본법이나 한국의 주거정책은 ‘국민’을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전

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정부의 필요에 따라 정부가 정한 절차에 의해 입국해 상당 기간 동안 거주하며 일정한 생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그들이 거주하는 동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수단으로의 안정된 주거를 선택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이주노동이나 주거와 관련한 국제 인권 규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번 사망사건으로 정부(고용노동부)는 뒤늦게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주거시설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에 대한 대책은 없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주거·빈곤 단체들은 사망한 포천 이주여성노동자를 추모하며, 사망의 원인을 개인의 건강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한다.

최소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라도 전반적인 주거실태 조사와 함께, 체류기간 동안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존 주거복지 제도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용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주거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망한 이주여성노동자는 다음 달이면 고국 캄보디아로 돌아가려고 비행기 표까지 사 놓았다고 한다. 그녀가 따뜻한 고국의 하늘에서 편히 쉬기를 빌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참고자료>

### 이주여성노동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대책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1. 지난 20일 경기 포천 소재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속행씨의 사인에 대해 경찰이 부검의의 1차 소견을 발표해서 언론보도가 되었다. 직접적 사인은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 난방이 되지 않는 부실한 비닐하우스 숙소의 문제, 4년 간 열악한 조건에서 고강도 노동을 지속해 온 문제, 아프더라도 제대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한 문제 등과 당연히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다. 주변 노동자들에 의하면 평소 건강이 나쁘지 않았던 여성노동자가 하루이틀 사이에 한파 속에 자다가 사망할 수 있다 단 말인가. 이주노동자는 입국 직후 취업교육을 받으며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고 이상이 있었다면 사업주가 받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간손상이 사인이라면, 힘든 노동을 하며 얻게 된 질병과 나쁜 노동조건,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숙소, 진료와 치료접근이 어려운 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되어야 하며 명확히 산재사망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 지자체와 사업주가 질병문제로 축소시켜서는 안되며 분명히 관리감독 책임과 사업장 숙소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2. 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매년 3천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기숙사 시설 등에 대하여 관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의 5% 정도이며 이 가운데 농업 사업장은 일부에 불과하다. 또, '외국인력 배정시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사업장 및 정보 허위제공 사업장에 감점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숙소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역시 앞으로 신규인력을 배정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존재하는 이와 같은 임시시설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다. 코로나로 인해 내년에 신규 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및 조립식패널 등에 대한 과감한 제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사업주는 취재와 방문이 이어지자, 사망노동자의 동료노동자들이 사측에 불리한 말을 할까봐 이들을 다른 장소로 보내서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망을 목격하고 놀란 상황에 처해 있을 동료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사업장 변경을 직권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도 대책을 철저히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 내 농촌에서 이렇게 한파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숙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들은 농업이주노동자들이 한파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급히 지자체 별로 점검을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직접적 사인에 대한 1차 소견이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이라고 해서 사건을 개인질병으로 축소해서는 안된다. 비닐하우스 숙소 시설에 대한 조사,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노동관계법 위반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이번 캄보디아 농업이주여성노동자의 사망이 개인적 죽음이 아니라 이주노동, 농업노동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쌓여서 발생한 사회적 비극이라고 본다.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12월 24일

농업이주여성노동자 사망사건대책위원회(가)

<숙소 사진>



